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01일

농소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**	조** 1980-08-1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1-11-01